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6. 27 선고 2023나121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6. 27 선고 2023나1219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0가합22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 피항소인 1. C

2. 주식회사 D

변론 종결 2024. 4. 25.

판결 선고 2024. 6. 2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0가합22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제1심 공동피고 B는 연대하여 197,457,664원 및 그중 197,457,124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는 2020. 5. 28.까지, 제1심 공동피고 B는 2020. 5. 9.까지 연 9%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는 49,510,635원 및 그중 49,510,515원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2020. 5. 28.까지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과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259,610,7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59,610,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19. 4. 15. 접수 제12761호로 마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이에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과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259,610,7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59,610,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19. 4. 15. 접수 제12761호로 마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별지 포함)한다.

○ 해당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 "피고 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회사"라고 일괄하여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2행 "결하였고"를 "체결하였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4행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를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서"로, 같은 면 16행 "이 사건 제2신용보증서"를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서"로 각 고치고, 같은 면 15행 "199,669,076원" 뒤에 "(= 원금 199,000,000원 + 이자 669,079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3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뒤에 "는 U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23행 "이 법원의 주식회사 L"을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L"으로 고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위 197,457,664원 및 그중 197,457,124원(= 199,669,076원 - 회수금 2,211,9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제1심 공동피고 B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제1심 공동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B와 형제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표의 각 근저당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말소되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2. 5. 24. 기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259,610,7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59,610,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D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2019. 3. 25.)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회사, B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비교적 가까운 장래인 2019. 7. 31.과 2019. 8. 20.에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 회사, B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회사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상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제1심 공동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15년식 포터Ⅱ 차량(차량번호 1 생략), 2013년식 아반떼 차량(차량번호 2 생략)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위 각 차량에 대하여

2017. 7. 19. 건강(요양), 연금, 고용, 산재보험 체납액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의 압류가 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 3개월 후인 2019. 6. 2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이러한 재산상황 및 위 회사의 운영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연대채무자 제1심 공동피고 B 소유의 군산시 O P호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Q가 2019.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R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0. 6. 18.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또한 S 주식회사가 2019. 5. 20. 피고 B가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800여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불과 약 4개월 내지 5개월 후인 2019. 7. 31. 및 2019. 8. 2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에게 위 각 대위변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위 구상금 등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사해행위의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 및 피담보채무의 범위 가) 제1심법원 감정인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624,256,000원이고, 이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1,312,128,000원($=2,624,256,000원 \div 2$)이다.

나) [표1] 순번 1, 7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하여 본다. 위 표 순번 1, 7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주채무자는 제1심 공동피고 B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의 지분에 대해서 피고 C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이 각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 C과 주식회사 H이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표 순번 1, 7 각 근저당권으로 제1심 공동피고 B의 이 사건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인 909,071,610원 및 150,000,000원이 된다.

다) [표1] 순번 2, 3, 4, 5, 6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하여 본다. 위 표 순번 2, 3, 4, 5, 6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H, 제1심 공동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제1심 공동피고 B는 그 공동담보인 이 사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이 담보하는 위 표 순번 2, 3, 4, 5, 6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각 근저당권의 각 해당 피담보채무액 중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에서 이 사건 지분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을다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4. 10.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379,861,5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기가 위 감정 시기로부터 약 1개월 이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은 위 379,861,520원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표 순번 2, 3, 4, 5, 6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아래 [표2]의 '이 사건 지분이 담보하는 채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그 합계액은 325,616,896원이다.

순번 2	292,000,000	127,538,7441) 292,000,000원 × 이 사건 지분 가액 1,312,128,000원/3,004,117,520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2,624,256,000원 +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 379,861,520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순번 3, 4, 6	390,000,000	170,342,8432) 390,000,000원 × 1,312,128,000원/3,004,117,520원
순번 5	63,500,000	27,735,3093) 63,500,000원 × 1,312,128,000원/3,004,117,520원
합계	745,500,000	325,616,896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지분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1,384,688,506원(= 909,071,610원 + 150,000,000원 + 325,616,896원)이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인 1,312,128,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심 공동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이 사건 지분이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원철

판사김경선

판사기획광

별지

가액 2,624,256,000원 +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 379,861,520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390,000,000\text{원} \times 1,312,128,000\text{원} / 3,004,117,520\text{원}$

3) $63,500,000\text{원} \times 1,312,128,000\text{원} / 3,004,117,520\text{원}$